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14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 안상훈·김성원·김선교

이성권 · 서천호 · 유용원

박덕흠 • 임이자 • 한지아

김예지 • 백종헌 • 최보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더라도 영화의 편집·삭제를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후 영화관에 상영되는 경우 선정적·폭력적인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를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를 말한다)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상영등급 분류를 신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생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②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			
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			
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			
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 예고편영화의 상영등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급은 영화(예고편영화의 원작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	인 영화를 말한다)의 상영등급		
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u>수 있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